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정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95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2. 조문별 검토	11
가. 정의	11
나. 국가의 책무	14
다. 퇴직우편집배관 취업 등 지원	17
라. 우편관서의 장의 의무	22
마.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4
바.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27
사. 우편물의 이용 제한·집배업무의 일부 정지 등	31
아. 집배업무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33
자. 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38
 ※ 참고자료	 41
1. 제정안과 경찰복지법·소방공무원복지법·군인복지기본법 등 비교 ...	41
2. 우편집배관과 경찰관·소방관·군인 업무특성 비교	4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동영의원 등 64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2.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우편집배관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증가, 고강도 노동, 감정노동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륜차를 이용한 물류 배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현장근무 특성상 기후조건에 따라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으로 인해 우편집배관들이 돌연사하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복지시설 및 체력시설의 설치·운영,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우편집배관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우편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우편집배관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집배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 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 보호를 위하여 우편집배관 업무환경을 5년마다 측정하여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우편집배관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 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퇴직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창업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집배원(우편집배관)¹⁾은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업무²⁾를 주로 담당하는 우체국 직원을 의미하며, 각 근무지별로 총 1만 7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음. 이 중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우정직 공무원 집배원이 1만 5천여명이고, 별정우체국 집배원 및 공무원직근로자를 포함한 비공무원³⁾이 2천여명 있음.

<근무지별 집배원 인원>

(‘24.11.30. 기준, 단위: 명)

구분	운용정원(관서 배치 정원)			
	우정집배	별정집배	공무직	계
서울청	2,952	-	21	2,973
경인청	3,993	151	247	4,391
부산청	2,160	224	132	2,516
충청청	1,767	230	201	2,198
전남청	1,197	173	223	1,593
경북청	1,571	217	103	1,891
전북청	669	192	63	924
강원청	669	44	90	803
제주청	219	2	14	235
계	15,197	1,233	1,094	17,524

자료: 우정사업본부

- 1) 현행 법령에는 집배원 또는 우편집배원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에서는 우편집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2)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별표2] 집배: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3) 비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집배 직종의 종류>

구분	종류	설명
공무원	우정집배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인 집배원
비 공무원	별정집배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별정우체국장과 계약·복무하는 집배원
	상시계약집배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을 담당하는 공무원 집배원
	특수지집배원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복무하는 공무원 집배원
	농어촌소포배달원	농어촌지역에서 소포배달을 전담하는 공무원 집배원
	아파트전담집배원	아파트 우편물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집배원

자료: 우정사업본부

- 우편집배관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노동환경으로 인하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지원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⁵⁾이 있음.

<최근 5년간 집배원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사 고 건 수				인 명 피 해			
	교통사고		기타 사고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이륜차	차량						
2020년	382 (69.7)	22 (4.0)	144 (26.3)	548 (100.0)	0 (0.0)	35 (6.4)	513 (93.6)	548 (100.0)
2021년	453 (70.8)	21 (3.3)	166 (25.9)	640 (100.0)	1 (0.2)	62 (9.7)	577 (90.1)	640 (100.0)
2022년	453 (73.4)	14 (2.3)	150 (24.3)	617 (100.0)	1 (0.2)	53 (8.6)	563 (91.2)	617 (100.0)
2023년	483 (75.2)	16 (2.5)	143 (22.3)	642 (100.0)	0 (0.0)	54 (8.4)	588 (91.6)	642 (100.0)
2024년	142 (75.9)	3 (1.6)	42 (22.5)	187 (100.0)	0 (0.0)	14 (7.5)	173 (92.5)	187 (100.0)

- 1) 산업재해통계업무 처리규정 기준(노동부 예규)에 따라 업무 관련 산재/공상 승인건 관리(출퇴근 사고 제외)
2) 위 통계는 '24년 11월 말 기준으로 향후 산재·공상 승인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함

자료: 우정사업본부

4)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및 기간제 관리규정」에 의한 근로자

5) 2023.9.2. 민주우체국본부 집배관 복지법 제정 요구 결의대회
2024.1.3. 민주우체국본부 집배관 복지법 발의 기자회견

- 이에 제정안은 우편집배관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우편집배관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우편집배관의 직무상 특수성에 비추어, 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입법의 포섭 대상을 특정 직역이나 집단으로 한정하는 입법의 필요성과 적절성, 유사입법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제정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다음과 같이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특정직공무원⁶⁾인 경찰·소방공무원·군인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목적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6)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2항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시행⁷⁾ 중에 있는 반면에,
일반직공무원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보건안전·복지 관련
입법례는 없다는 점을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본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⁹⁾이 제21대 국회
후반에 발의되었으나 별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 한편,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 공무원¹⁰⁾으로 분류된
교정공무원¹¹⁾을 대상으로 한 보건안전 및 복지법안도 발의¹²⁾
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한 사례는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우편집배원이 외근이 많고
날씨 및 도로 위 돌발상황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이 타 법률로 보호·지원이 가능하고,
직종·직원 간 복지 불균형 야기, 위험직무 공무원과의 역차별,
민간 유사분야 근로자 대비 과잉보호, 집배 근무환경 개선 지속추진,
재정 소요 부담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참고자료1 첨부] 제정안과 경찰복지법·소방공무원복지법·군인복지기본법 등 비교,
[참고자료2 첨부] 집배관과 소방관·경찰관·군인 업무특성 비교

8) 우정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의 범주에 해당함.

9) 2024.01.08. 발의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이은주의원 등 17인) : 임기만료 폐기

10)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 공무원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통령경호처 직원, 국가
정보원 직원, 교도관, 산림항공기 조정사 및 동승근무자, 어업감독 공무원, 사법경찰

11) 교정직 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의 범주에 해당함.

12) 2020.07.10 발의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정성호의원 등 11인) : 임기만료 폐기

2017.06.13 발의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정성호의원 등 11인) : 임기만료 폐기

<제정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의견>

- ☐ **(타 법률로 보호·지원 중) 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 등의 규정으로 보호·지원 중임**

* 우정사업본부는 타 공무원(공공행정)과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고 있어, 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업무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음

**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퇴직집배원 취업 등 지원(공무원연금법)

- ☐ **(집배원 외 타 집단과의 갈등) 추가적인 지원은 조직내외 참여한 갈등 우려**

- **(^①조직內: 직원간 불평등, 조직긴장감 고조) 우정사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원간 복지 혜택의 수준이나 범위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노조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음**

* 전(全) 종사원 42,848명 중 집배원 18,446명(43.1%), 비집배원 24,402명(56.9%)

집배원은 우정직 10종 중 하나이며, 집배 종사원은 공무원(86.7%), 비공무원(13.3%) 등으로 다양

** 현재 우정노조, 민주우체국본부, 공무원노조, 우체국FC 노조 등 7개 노조가 있으며, 양대 노조 중 우정노조는 수용, 공무원노조(행정·기술직)는 불수용 입장

- **(^②공무원內: 위험직무 공무원과의 역차별)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로 분류되어 지원받는 직종 중 소방관·경찰관을 제외한 국정원, 교도관 등은 별도 지원법이 없으며, 집배원은 위험직무군에 포함되지 않음**

*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 공무원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통령경호처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 교도관, 산림항공기 조정사 및 동승근무자, 어업감독 공무원, 사법경찰

※ 위험직무 공무원으로 분류된 교정공무원도 보건안전 및 복지법안이 2017년과 2020년 7월에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됨

- **(^③산업內: 민간근로자 대비 과잉보호) 공무원인 집배원(산안법 전면 적용)을 배달라이더, 택배원(산안법 일부적용 혹은 비적용)보다 더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해관계자간의 공감대가 선행될 필요**

- ☐ **기타사항**

- **(협약 등으로 지원 가능) 이미 안전보건에 대한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 복지지원은 법률제정이 아닌 단체협약 등을 활용하는 것이 외부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유리**

- **(근무환경 개선 지속 추진) 배달물량 감소, 예비인력 확보, 근무시간 축소 등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별도 지원법안 제정 필요성은 낮음**

- **(재정 부담) 추가재정 소요 추계 시 특수건강진단 및 체육시설 이용 지원 등에 향후 5년간 467.1억원(연간 93.4억원) 소요 예상**

※ 우본은 타 정부기관과 달리 특별회계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필요예산 직접 조달의무가 있음, 우편 적자 상황(연간 △1,700억원 예상)에서 추가재정 소요에 대해 우정노조도 우려를 표명

- 행정안전부는 제정안 제8조(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운영 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있으므로 동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제정안 제11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4조(퇴직우편집배관 취업 등 지원)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타 법률¹³⁾로 보호·지원이 가능하므로 삭제 필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제정안에 대하여 노동조합별¹⁴⁾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우체국본부¹⁵⁾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¹⁶⁾하고, 전국우정노동조합¹⁷⁾은 본 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나,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재정 적자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은 국가가 확보·지원한다는 조항 신설을 요청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¹⁸⁾은 우정사업 종사원 중에서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정책을 세우는

13) 산업안전보건법(특수건강진단), 국가공무원법(공무원 복지), 공무원연금법(퇴직자 지원 등) 등

14) 현재 전국우정노동조합, 민주우체국본부, 공무원노조, 우체국FC 노조 등 7개 노조가 있음.

15) 민주우체국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16) 2024.1.3. 민주우체국본부의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 발의 기자회견

17) 전국우정노동조합

- 직종: 우정직·별정국직·공무직 등 / 조합원수: 27,291명(가입률 83.5%) / 상급단체: 한국노총

※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전체 집배원 17,989명 중 16,221명(90.2%)의 집배원이 가입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

- 직종: 행정·기술직 / 조합원수: 5,688명(가입률 60.3%) / 상급단체: 공무원노총

- 소방관·경찰관 등과 직종 및 업무상 차이점, 현행 법령으로 보호·지원이 가능, 직원·직종 간 불평등 야기 등으로 당장 추진을 반대 입장

- 종사원의 공감대와 공론화를 통한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것은 조직 내에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할 수밖에 없어 반대 입장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67억 1,000만원(연평균 93억 4,200만원)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음.¹⁹⁾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95	0	0	0	0	95	19
보건안전 실태조사	50	0	0	0	0	50	10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27	27	27	27	27	135	27
집배업무환경측정	158	0	0	0	0	158	32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7,364	0	7,662	0	7,971	22,997	4,599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20	20	20	20	20	100	20
체육시설 이용 지원	4,252	4,337	4,424	4,512	4,603	22,128	4,426
퇴직우편집배관 교육지원	148	175	213	242	269	1,047	209
계	12,114	4,559	12,346	4,801	12,890	46,710	9,342

- 19) 주: 1. 각 재정수반요인 별로 가정한 용역단가, 위원회 인원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 건강진단 주기·인원 및 단가, 민간 체육시설 이용 인원 및 단가, 퇴직집배관 인원 및 교육 단가의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2. 제정안 중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 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4.12.)

- 제정안은 3개의 장 및 14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 체계 >

장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우편관서 장의 의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실태 조사) 제8조(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3장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제9조(우편물의 이용 제한·집배업무의 일부 정지 등) 제10조(집배업무환경측정) 제11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2조(역학조사) 제13조(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제14조(퇴직우편집배관 취업 등 지원)
부 칙	시행일

- 종합해보면,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 필요성, 입법을 통한 수단의 적정성, 유사입법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신중검토 필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조문별 검토

가. 정의

- 제정안은 집배업무, 우편관서, 우편집배관, 우편집배관 가족, 복지시설, 체육시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배업무”란 우체통·개별 방문 접수 등 우편물의 수집, 우편물의 배달 및 그 밖에 우편물의 수집·배달과 관련된 부대 업무를 말한다.
2. “우편관서”란 우체국, 별정우체국 등 우편집배관을 사용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는 관서를 말한다.
3. “우편집배관”이란 우편관서에 소속되어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우편집배관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우편집배관의 배우자

나. 우편집배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5. “복지시설”이란 우편집배관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우편관서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나. 보육시설

다. 수련원, 연수원

라. 우편집배관 및 우편집배관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우편집배관의 복지를 위한 시설

6. “체육시설”이란 우편집배관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집배업무”, “우편관서”, “우편집배관”, “우편집배관 가족”, “복지시설”, “체육시설”은 이하 제정안 조문의 주요 용어로서, 정책의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은 통상의 입법례로 보임.²⁰⁾
- 한편, 현행 법령에는 우편집배원²¹⁾, 집배원²²⁾과 같은 명칭이 사용중인데, 본 제정안에서 처음 등장하는 “우편집배관”이라는

20) 유사입법례인 경찰복지법·소방공무원복지법·군인복지기본법 등에서도 유사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21) 「우편법」 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차량·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22)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2] 우정직공무원의 직급·계급 구분 및 직종별 직무구분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우정 1급	우정 2급	우정 3급	우정 4급	우정 5급	우정 6급	우정 7급	우정 8급	우정 9급
우정	우정	우정	우정 사무관		우정 주사				우정 주사보	우정 서기	우정 서기보
직종			직무내용								
전기			전기 및 동력시설의 조작과 난방업무의 겸무 또는 보조								
기계			우편기계시설의 조작과 계량기 관리								
운전			각종 자동차 운전 및 우편업무(방문소포업무 포함)								
집배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우편			우편물의 접수·구분·발착·운송 및 각종 자동차운전 또는 방문소포업무								
계리			우체국금융업무·현업장구(회계)업무·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업무								
방호			청사방호 및 안내								
열관리			난방 및 냉·난방시설의 조작과 전기업무의 겸무 또는 보조								
조리			구내식당 취사								
환경미화			의·탁차류, 집기의 수리 및 청사시설의 유지보수와 청소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4조(직원의 직종 및 직급)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직종	사무원			집배원			
직급	사무장	사무주임	사무원	집배 6급	집배 7급	집배 8급	집배 9급

명칭은 기존 직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당 집배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대외적인 위상과 사기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안 제2조제3호는 “우편집배관”을 ‘우편관서에 소속되어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집배업무를 하는 우정직공무원²³⁾과 비공무원 직원(별정우체국 집배원, 공무직근로자 등)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아울러서 ‘OO관’이라고 지칭한 사례는 찾을 수 없음.
- 더욱이 우정직공무원 중에도 전기, 기계, 운전 등 다양한 직종²⁴⁾이 있으나 집배 직종에 대해서만 ‘우편집배관’으로 정의하고 지칭·호칭하게 되었을 때는 다른 직종의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3) 「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24) 우정공무원의 직종(10종): 전기원, 기계원, 운전원, 집배원, 우편원, 계리원, 방호원, 열관리원, 조리원, 환경미화원

나. 국가의 책무

- 제정안은 우편집배관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로서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 시책 수립·시행, 건강장애 예방, 치료, 생활안정 지원, 재원확보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우편집배관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우편집배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우편집배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집배업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우편집배관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3조의 국가의 책무 규정은 우편집배관의 복지 증진이라는 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부여되는 책무를 규정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이며, 유사입법례로서 경찰

복지법²⁵⁾, 소방공무원복지법²⁶⁾ 및 군인복지기본법²⁷⁾에서도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제1항에 포함된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이라는 내용은 경찰복지법과 군인복지기본법에도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과 군인이 극히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함과 함께, 연령정년 이외에도 계급정년 등 추가적인 정년 제한으로 인해 당사자가 원에 의하지 않고 퇴직(전역)을 할 수밖에 없는 직종임을 감안하여 명기된 것으로 보임.²⁸⁾

25)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수행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위험한 근무여건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건강장애 예방 및 치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7) 「군인복지기본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8)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이나 소방공무원복지법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계급 정년 현황>

구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국정원직원
근거법령	경찰공무원법 제30조	소방공무원법 제25조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22조
연령정년	60세	60세	60세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장: 11년 소방령: 14년	2급: 5년 3급: 7년 4급: 12년 5급: 18년

<군인의 계급별 정년>

구분	장성				영관			위관	준위	부사관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근거법령	「군인사법」 제8조												
연령정년	63세	61세	59세	58세	56세	53세	50세	43세	55세	55세	53세	45세	40세
근속정년	-	-	-	-	35년	32년	24년	15년	32년	-	-	-	-
계급정년	-	4년	6년	6년	-	-	-	-	-	-	-	-	-

- 한편, 집배원²⁹⁾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과 달리 계급정년 등의 추가적인 정년 제한 없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연령정년 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 우편집배관에 대하여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의 지원 책무가 안 제3조 국가의 책무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임.

²⁹⁾ 현행법령에 따른 명칭

다. 퇴직우편집배관 취업 등 지원 (안 제3조와 연관)

- 제정안은 퇴직 예정자를 포함한 퇴직우편집배관에게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제 정 안
제14조(퇴직우편집배관 취업 등 지원)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퇴직우편집배관(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우편집배관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퇴직우편집배관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우편집배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퇴직우편집배관이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고용할 수 있다.

- 안 제14조는 취업지원 및 교육훈련, 창업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현재 근무하는

우편집배관들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앞의 총괄적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직원 간 복지혜택 불균형, 위험직무 공무원과의 역차별, 민간 유사 근로자 대비 과잉보호, 퇴직 집배원의 재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더하여 퇴직(예정)우편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등은 다른 직렬의 공무원 등에 대하여 유사한 지원 입법 사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군인·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해서는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퇴직공무원 취업 등 지원규정을 두고 있으나,
앞서 안 제3조(국가의 책무)에서 다루었듯이 극히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함과 함께, 연령정년 이외에도 계급정년 등의 추가적인 제한으로 인해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직업의 안정성이 낮은 직종이며, 민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입법조치로 보임.

<퇴직공무원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입법례>

법	내용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1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경찰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취업지원 등) ①,②(생략)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① 원장은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상담·직업상담·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창업상담·창업교육 등의 창업지원 및 경력개발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입법례를 보면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인 경우와 성폭력 피해자·장애인·청소년부모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구직자 대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취업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입법례>

구분	법(내용)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취업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취업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취업지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직업훈련),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6(창업 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구직자 대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

○ 아울러, 안 제14조제4항에 퇴직우편집배관이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³⁰⁾에 사업주에 일반론적으로 재고용 노력 의무를 부여한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입법례는 없음.

3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우편관서의 장의 의무

- 제정안은 우편관서의 장에게 소속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기본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제 정 안
제4조(우편관서의 장의 의무) ① 우편관서의 장은 소속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우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계획에서 정한 기본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우편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본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여 기본계획의 인력 기준 준수 의무를 두고 있음.
-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관서별 정원은 「우정사업본부 현업 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과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통해 동일한 기준(배달물량, 세대수, 이동거리 등)으로 소요인력을 산출하는데, 정원(측정)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이 없는 우편관서의 장에게 기본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준 준수 의무를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면,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³¹⁾의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3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제정안은 5년마다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조(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3. 소요인력측정 기준, 기본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준 등 우편집배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집배업무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정밀건강진단 및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집배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우편집배관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편집배관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집배업무환경측정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6조제2항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동 조항의 제3호에 소요인력측정 기준, 기본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준 등 우편집배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³²⁾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2항에서 우편관서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인력 기준 준수 의무를 두고 있음.

○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조직법」 제8조제1항³³⁾에 따른

32) 유사입법례인 소방공무원복지법·경찰복지법·군인복지기본법에서는 기본계획 포함사항으로 정원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두고 있지 않음.

33) 「정부조직법」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는 업무량에 따라 적정 규모의 정원을 유지·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³⁴⁾, 우정사업 본부는 우정사업부문의 조직·인사 및 예산 등에 있어서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 및 예산회계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한 취지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있어, 본 제정안에 정원관리 기준인 소요인력측정 기준, 기본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은 다른 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바.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 제정안은 우편집배관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8조(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우편집배관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이 5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

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8조는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 전문가와 행정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 집배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보다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³⁵⁾에 따르면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³⁶⁾에 따라 우정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의 기구로 ‘우정사업운영위원회’³⁷⁾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제5조의2³⁸⁾에 따라 분과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등 심의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기

3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정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7) **우정사업운영위원회 기능**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우정사업 경영실적평가, 우정사업 재정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

3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 중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보다는 기존 위원회를 활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집배관 보건 안전 및 복지 정책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적 평가 등³⁹⁾을 통해 심의·의결 가능하므로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3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한 사항
5. 우편요금, 우편환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 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12. 그 밖에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사. 우편물의 이용 제한·집배업무의 일부 정지 등

- 제정안은 소속 우편집배관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제 정 안
제9조(우편물의 이용 제한·집배업무의 일부 정지 등) ① 우편관서의 장은 「우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재해 등 사유로 인하여 소속 우편집배관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집배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우편관서의 장은 우편물 물량의 일시적인 급증,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속 우편집배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집배업무의 일부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우편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 제한·집배업무의 일부 정지, 제2항에 따른 집배업무의 유예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우편법」 제6조제1항⁴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40) 「우편법」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거나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거나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9조는 이와 상당부분 중복되는 규정으로 보임.

- 다만, “우선적으로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집배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판단보다 선제적으로 우편집배관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직무권한의 위임, 배분, 전결 등을 통해 우편관서의 장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아. 집배업무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 제정안은 집배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고 위험과 질병요인으로부터 우편집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우편집배관의 업무환경을 측정하고,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집배관의 질병과 집배업무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안

제10조(집배업무환경측정)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집배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고 위험과 질병요인으로부터 우편집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우편집배관의 업무환경을 측정하여 분석·평가(이하 “집배업무환경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집배업무환경측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배업무환경측정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집배업무환경측정 및 집배업무환경측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우편집배관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우편집배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우편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우편집배관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우편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우편집배관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에 따른 정밀건강진단의 시기·항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역학조사)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집배관의 질병과 집배업무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우편관서의 장과 우편집배관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정한다.

○ 집배업무환경측정은 집배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고 위험과 소음, 방사선, 유해물질 등의 질병요인(유해인자 등)이 우편집배관에게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분석·평가하는 것이고, 역학조사는 특정 우편집배관에게 발생한 질병이 집배업무 유해요인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질병과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말함.

<집배업무환경측정과 역학조사 비교>

구분	집배업무환경측정	역학조사
목적	○ 직업성질환 예방	○ 공무상 재해 입증 지원, 새로 발견된 직업성질환 예방
주요 내용	○ 직업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유해인자 중 집배관에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해인자의 노출정도를 측정	○ 특정 집배관에게 발생한 질환(암 등)이 직업성질환으로 추정되는 경우 특정 집배관의 업무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인자와의 상관관계 입증을 위한 조사* * 질병에 의한 공무상 재해 입증 등
업무 환경	○ 전체 사업장의 집배업무환경	○ 직업성질환이 의심되는 집배관의 집배업무환경
실시 시기	○ 5년마다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업무환경측정, 건강진단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발생 원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자료: 우정사업본부

○ 제정안은 집배업무환경측정과 역학조사를 통해 우편집배관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모든 우정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대상인 ‘현업 관서’로서 현재 전 관서⁴¹⁾에서 작업환경측정⁴²⁾을 시행중에 있으며, 직업성

41)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현업관서: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을 제외한 모든 우정관서

42)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환이 의심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역학조사⁴³⁾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은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⁴⁴⁾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총 181종⁴⁵⁾)에 노출되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임.

○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전 직원(집배관 포함)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은 모든 우편집배관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임.

○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제정안과 같이 시행된다면 제정안의 특수건강진단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은 검사항목,

43)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4)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45) 가솔린 등 유기화합물(109종), 구리 등 금속류(20종), 염화수소 등 산 및 알칼리류(8종),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석면 분진 등 분진(7종), 금속가공유(1종), 소음 등 물리적 인자(8종), 야간작업(2종) 등 181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등

검사방법, 검진기관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바, 안 제10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배 업무환경측정” 용어와 유사하게 “집배업무건강진단”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⁴⁶⁾

-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과 별표22에서 규정되어 있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2종)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181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와 작업환경위해요소 연구용역⁴⁷⁾ 결과를 근거로,
 - 우편집배원이 근무하는 작업환경에서 현재까지 우편집배원에게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가 없고,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성질환자 발생 사례도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제정안과 같이 우편집배원만을 특정하여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집배원에게 영향을 주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업무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임.

46) 우정사업본부는 이 의견에 대하여 용어를 ‘우편집배원의 특수건강진단’으로 수정하여 수용한다는 입장임

47) 2021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자. 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 제정안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우편집배관의 복지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안

제13조(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의 복지 증진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복지시설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우편집배관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집배관과 우편집배관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이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편집배관의 직무 특성상 체력 유지 등이 요구되고, 도시 외곽 또는 격오지에 위치하고 있는 우정관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외부 보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참고로, 유사입법례인 경찰복지법⁴⁸⁾·소방공무원복지법⁴⁹⁾·군인복지기본법⁵⁰⁾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
- 4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이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을 말한다)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복지시설 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0)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복지시설등의 운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군인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르며, 군별로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앞의 총괄적 검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복지시설 확충 등에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35

[참고자료1] 제정안과 경찰복지법·소방공무원복지법·군인복지기본법 등 비교

제정안 조문	유사점	차이점	타 법령에서 보호 및 지원 가능여부
제3조 (국가의 책무)	-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부 내용은 상이	- 소방관 복지법은 퇴직 후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여 건 조성 내용이 없음 - 군인 복지법은 보건안전 관련 내용이 없음	- 산업안전 및 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 정부의 책무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4조 (관서장의 의무)	- 관서장의 의무로 보건안 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 이행을 규정	- 우편집배관 복지법은 기 본계획에서 정한 기본인 력과 예비인력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 - 소방관 복지법에는 재해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에 대한 기준 준수 및 현장의 보건안전 관련 정보 제공 을 규정 ※ 타 복지법은 인력기준 준수 의무 규정이 없음	- 산업재해 예방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등의 의무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률로서 우선 적용	-	-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행)	-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심 의 위원회를 심의를 거 쳐 기본계획을 수립·시 행	- 군인 복지법은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사항을 규정함	- ① 매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 ②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공무원연금법 제83조)
제7조 (실태조사)	- 경찰관, 군인 복지법에 5년 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현 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	-	-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 획 등의 수립·시행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후 생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 제4항)
제8조 (정책심사위원회)	-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 영을 규정함	- 집배관 복지법은 정책심 의위원회 구성원에 노동 조합 추천위원 포함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서 집배원 지원 심의 가능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 례법 제5조)

제정안 조문	유사점	차이점	타 법령에서 보호 및 지원 가능여부
제9조 (우편물 이용제한·집배 업무정지 등)	-	- 우편집배관 복지법은 천재지변이나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방관·경찰관·군인 복지법에는 업무정지 또는 회피규정이 없음	- ① 산업재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근로자 작업중지권(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 - ② 자연 사회재난 시 우편관서의 장의 업무정지 및 집배원의 선제적 업무정지(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정지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0조 (집배업무환경측정)	- 소방관 복지법에 법률에서 업무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	-	- 총괄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사업장이며, 현재 전 관서에서 작업환경측정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1조 (특수건강진단 등)	- 소방관, 경찰관 복지법에 건강 보호·유지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규정	-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2조 (역학조사)	- 소방관 복지법은 현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해 역학조사 실시를 규정	-	- 작업성 질환이 의심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명령에 따라 역학조사 가능(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13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 운영)	- 복지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해 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 병원, 체육시설, 휴양·요양시설, 매점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 등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대한 사업대책 마련(공무원연금법 85조 및 시행령 제91조)
제14조 (퇴직집배관 취업 등 지원)	- 소방관, 경찰관 복지법은 퇴직자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 창업지원 및 관련 비용 지원 규정	- 집배관 복지법은 재고용 규정이 있음	- 퇴직공무원의 사회 기여활동 관련 정책 또는 사업 등에 참여한 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0조)

자료: 우정사업본부

[참고자료2] 우편집배관과 경찰관·소방관·군인 업무특성 비교

구분	집배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업무환경	차량, 도보로 우편물 배달 (민간 위탁가능)	범죄 예방·수사 등 치안 (민간 위탁불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민간 위탁불가)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국민 보호 (민간 위탁불가)
업무중요도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업무량 및 부담 추이	우편물량 감소, 예비인력 확보 등으로 부담 경감	범죄 등 사건·사고의 지속 증가로 업무량 증가	화재 구조 구급등의 수요 증가로 업무량 증가	전쟁, 무력충돌 등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부담 가중
위험노출 종류	교통사고, 자연재난 등	범죄, 교통사고, 민원인과 갈등 등	화재, 자연 및 사회재난 등	전투 상황, 군사 작전·훈련 등
근무형태 (근무시간)	주간근무 (주간: 08시~17시)	주야간 교대 근무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다음날 09시)	주야간 교대 근무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다음날 09시)	주간근무, 휴일 당직근무 (주간: 08시~17시)
일반인 대비 질병발생 가능성	높음	높음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음)	높음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음)	높음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음)
퇴직 후 재취업(창업) 가능성	높음 (민간 유사업무 관련 재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	낮음 (업무 특성상 경험을 활용할 곳이 많지 않음)	높음 (소방안전이 지속 강화되고 있어 민간 업무 활용도 증가)	낮음 (업무 특성상 경험을 활용할 곳이 많지 않음)
책임·의무	회피 가능 ⁵¹⁾ (자연사회 재난시 업무정지 규정 有)	회피 불가 ⁵²⁾	회피 불가 ⁵³⁾	회피 불가
징계·벌칙	징계처분	징계처분, 벌칙(징역 또는 금고)	징계처분, 벌칙(징역 또는 금고)	징계처분, 벌칙(징역 또는 금고)
노동권 확보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 (노동3권 모두 보장)	단결, 제한적 단체교섭	단결, 제한적 단체교섭	징계처분, 벌칙(징역 또는 금고)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⁵⁴⁾	X	○	○	-

자료: 우정사업본부

51) 우편법(제6조) 및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집배원은 폭설·폭우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사회재난에 따른 위험상황시 회피 또는 업무 중지를 할 수 있음

52) 경찰공무원법 제24조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된다.

53)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활동에서 이탈·태만 등의 직무유기 금지)

54)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